

의안번호	2215323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5.
추계번호	25C6990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전국 시·군·구에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 1,500만원(연평균 1억 2,300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입소·퇴소심사위원회 운영(안 제17조)	123	123	123	123	123	615	12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 등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·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※ (현행법) 재량규정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2 (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·방법·절차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를 행하여 퇴소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 (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 등)	○	○ 기 운영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2	안 제17조의2 (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·방법·절차)	○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 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모든 시·군·구에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위원회 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, 228개 시·군·구(세종 및 제주 포함) 중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23개로, 개정안 시행 시 205개 시·군·구에 해당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해당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에 위원회 위촉직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다고 가정하고, 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(위원 수)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가 기 설치된 23개 위원회의 평균 위원 수(5.5명)에 부산 해운대구의 수당 지급 대상자 비율(57%)을 적용하여 평균 위원 수(3명)를 산정
 - －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2026년도 예산서에 해당 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에 대한 수당을 편성함

[표 2] 전국 기초지자체 입소퇴소심사위원회 설치 현황

지 역 평 균		전체 위원수(명)
		5.5
서울특별시	강남구	7
부산광역시	동래구	5
	해운대구	7
	사하구	6
인천광역시	서구	6
광주광역시	동구	5
대전광역시	대덕구	6
세종특별자치시	—	5
경기도	동두천시	5
	양평군	3
	화성시	5
	가평군	5
강원특별자치도	원주시	6
	강릉시	5
충청북도	청주시	7
전라남도	여주시	6
	순천시	5
	담양군	5
	해남군	6
경상남도	창원시	7
	진주시	5
	사천시	5
	의령군	5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

- (회의수당 단가) 부산 해운대구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수당 단가인 10만원을 적용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회의 개최 횟수) 부산 해운대구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회의 개최 횟수인 2회를 적용
 - 안 제17조의2는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를 행하여 퇴소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입소·퇴소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 시행 시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증가할 회의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

- 추계결과,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입소·폐소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 1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입소·폐소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신규 설치 기초지자체 수(개)	205	205	205	205	205		
위원 수(명)	3	3	3	3	3	-	-
회의 횟수(회)	2	2	2	2	2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)	0.1	0.1	0.1	0.1	0.1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123	123	123	123	123	615	1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